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71 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정동만·송언석·엄태영

김형동 · 김선교 · 박형수

김태호 · 김종양 · 김상욱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·임대차 계약,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,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,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소유자·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(姓)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의2).

법률 제 호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는"을 "자(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다)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명 중 성(姓)만을 표기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.
- ④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. 이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29조의2(전입세대확인서의 열 제29조의2(전입세대확인서의 람 또는 교부) ① (생 략) 람 또는 교부) ① (현행과 같 유)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 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----- 자(「출입국관리법」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같다. 한 외국인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 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 한다)는 ---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 ③ 열람 또는 등・초본 교부기 서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 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. 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전입 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세대주 또는 동 거인의 성명 중 성(姓)만을 표 기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 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. <신 설> ④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기

관의 장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. 이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④ (생 략)